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- 28호

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」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11월 3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범죄피해자·이상동기 범죄의 정의 정비 및 신설(안 제2조제1항제1호 ~ 제2호)

나. 구청장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서 범죄 예방까지 확대(안 제3조, 안 제5조제2항제3호 ~ 제5호, 안 제6조제1항, 안 제8조)

다.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전화 : 02)3425-7388, FAX : 02)3425-7292, E-mail : tnk10@gangdong.go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